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아이수루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498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3월 27일

발 의 자: 아이수루 의원(1명)

찬 성 자: 김기덕, 김성준, 김원태,
박수빈, 박춘선, 서상열,
송도호, 오금란, 유정희,
이상훈, 이영실, 이용균,
이원형, 이종태, 이종환,
임종국, 홍국표 의원(17
명)

1. 제안이유

- 2024년 학교 급식 노동자 산재 발생 건수는 총 145건으로, 2020년 34건 대비 5배 가량 증가할 만큼 급식노동자 구인난이 계속되고 있으며, 올해 역시 여전히 높은 노동 강도와 열악한 처우 등으로 신규 충원 및 기존 인력 이탈 등을 초래하고 있음
- 이에 급식종사자의 부담 개선을 위해, 기본계획 수립 시 급식종사자의 의견 수렴뿐만 아니라, 이를 반영하기 위한 교육감의 역할 강화는 물론, 급식종사자의 배치 및 인력 운영에 있어 급식종사자의 의견 수렴 및 업무 범위와 내용 등을 조정하기 위한 학교장의 역할 강화에 대한 근거 마련
- 또한, 급식 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조리실 내 환기 설비 등의 설치 시,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로 인한 위험 요소를 강조하여 환기 설비 등의 설치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

2. 주요내용

- 가.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규정 (안 제1조)
- 나. 기본계획의 수립 시, 교육감의 역할을 강화하여 규정 (안 제5조)

다. 급식종사자의 배치 및 인력 운영에 있어 급식종사자의 의견 수렴 및 업무 범위와 내용 등을 조정하기 위한 학교장의 역할을 강화하여 규정 (안 제6조)

라. 조리실 공기질 관리에 있어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로 인해 종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강조하는 등 근거 마련 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학교급식법」,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등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학교급식 제공에 전념할 수 있는” 을 “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” 으로 한다.

제5조제4항 중 “수렴할 수 있다” 를 “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” 로 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경우” 를 “경우 해당 급식종사자의 의견을 듣고” 로, “범위 및” 을 “범위와” 로, “조정할 수 있다” 를 “조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” 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조리실 내에” 를 “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을 차단하거나 줄일 수 있는” 으로, “설치” 를 “조리실 내에 설치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학교에서 운영하는 급식시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<u>학교 급식 제공에 전념할 수 있는</u>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학교</u> <u>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</u> ----- -----.
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~ ③ (생 략)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급식종사자들의 의견을 <u>수렴할 수 있다.</u>	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<u>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u>
제6조(급식종사자의 배치 및 인력 운영 등) ① · ② (생 략) ③ 학교장은 급식종사자가 산업재해 등으로 학교급식 제공 업무를	제6조(급식종사자의 배치 및 인력 운영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

원활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업무의 범위 및 내용 등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9조(조리실 공기질 관리) ①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조리실 내에 적절한 환기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----- 경우 해당 급식종사자의 의견을 듣고 ----- 범위와 ----- 조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9조(조리실 공기질 관리) ① -----

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을 차단하거나 줄일 수 있는 --- 조리실 내에 설치---

②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전반의 임의규정(∼할 수 있다)을 노력의무조항(∼노력하여야 한다)으로 변경하고 기존 현행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¹⁾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주 병 준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

1) 안 제9조(조리실 공기질 관리)에 조리과정에서 발행하는 유해물질을 차단하는 목적의 환기시설이라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“공기질 관리목적”이라는 큰 틀에서 변경된 내용은 아니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